

공무원 징계의결 요구서

1. 인적사항	성명	(한글) 이도훈 (한자)	생년월일	1964. 3. 26.		
	소속	중량물재생센터 운영과	직급	지방환경주사	재직기간	1993. 5. 15.부터 ~ 현재 (29년 5월)
	주소	경기도 군포시 산본로432번길 25, 1222동1901호(산본동, 한양목련)				

2. 징계사유 별첨 '비위사실 조서'와 같음

3.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	징계의결 요구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위 사람은 혈중 알코올농도 0.289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, 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「도로교통법」 위반(음주운전) 죄명으로 '불구속구공판' 결정하였음- 음주운전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「지방공무원법」제55조를 위반한 것이고, 「같은 법」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함-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3조 제3호 및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'중징계' 의결을 요구함
	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	[]해당함(대상금액: 원/ 배) [O]해당 없음

위와 같이 징계 의결을 요구합니다.

2022년 10월 일

서울특별시



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 귀중

비위사실조사서

소 속 :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과
직 급 : 지방환경주사
성 명 : 이도훈(640326-1*****)

위 사람은 2017. 7. 17.부터 현재까지 중량물재생센터 운영과에서 지방환경주사로 근무중인 공무원이다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55조에 따르면 “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” 고 되어 있다.

한편,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, 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” 고 되어 있고, 제4항에 따르면, “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.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” 고 되어 있다.

위 사람은 2022. 7. 8. 22:55경 혈중 알코올농도 0.289%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중량물재생센터 내 약 3m 구간에서 19고6087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.

위와 같은 행위는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이 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‘도로교통법 위반(음주운전)’ 죄명으로 2022. 7. 22. ‘불구속구공판’ 결정하였다.

음주운전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5조를 위반한 것이고,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.

한편,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」 [별표 3] ‘징계에 관한 개별기준’에 따르면,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, 혈중 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인 경우 ‘정직이상’의 징계 기준이 정해져 있다.

또한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[별표 3] ‘음주운전 징계기준’에 따르면,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, 혈중 알코올농도 0.2퍼센트 이상인 경우 ‘중징계 요구’ 하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 제3조 제3호 및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‘중징계’가 요구된다.